

해외경쟁정책동향



제54호 2011. 3. 28.

33330 목 차 \$88333

4 [리크] 크크시 에트리웨시 교사 세계 비료	
1. [미국] 구글의 반독점행위 조사 예정 발표	1
▶ 최근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는	
구글에 대하여 반독점소위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번 회기 중 이루어질 예정	
2. [미국] FTC, 특허제도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 ·····	3
▶ 특허법상 특허공지(patent notice)제도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혁신 촉진을 통한 소비자 이익 증대를 강조	
3. [중국] NDRC와 SAIC의 반독점법 관련규정 비교	4
▶ 반독점법과 두 기관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반독점 관련 규정을 비교	
4. [중국] 발전개혁위, 소금판매업자 가격법 위반행위 처벌	7
▶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소금판매가격을 편승	
인상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서민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안정 의지를 확인	
5. [칠레] 경쟁당국 조사협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논란 기속화	8
6. [브라질] Furlan, 브라질 경쟁당국(CADE) 위원장으로 내정	8

국제협력과

미국 1. 구글의 반독점행위 조사 예정 발표

(정리 : 전상준 사무관)

- □ (개요) 미 상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원회 Herb Kohl 위원장(공화당)은 이번 회기 중에 세계 최대 검색엔진업체*인 구글로 인해 촉발된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문제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 (3.11.)
 - * 구글은 미국내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traffic (負荷) 기준 65.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Yahoo가 16.1%, Microsoft Corp.이 13.6%로 뒤를 잇고 있음
 - 구글이 최근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해 온라인 광고 및 전자 상거래 시장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강화한 점을 특히 주목
 - Mike Lee 상원의원(공화당)도 Kohl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경쟁법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
- □ (쟁점사항) Lee 의원의 공개서신은 반독점소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구글 관련 경쟁법 쟁점으로 다음 사항을 제시
 - ① (온라인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 경쟁자인 쇼핑·여행 등 특정분야 검색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화면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AdWords*를 통한 검색어(keyword) 광고 비용을 과도하게 인상한 혐의
 - * 구글이 운영하는 온라인 광고 중개 프로그램으로서 광고주를 구글 검색광고 및 다른 온라인 광고 서비스와 연결
 - ② (기업결합) DOJ에서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구글/ITA* 기업 결합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행검색·예약 분야에서 구글의 독점력 강화 문제
 - * 구글이 여행예약 소프트웨어업체인 ITA Software를 인수하는 7억달러 규모의 인수 건으로 이에 대해 경쟁정책 연구단체인 AAI 등은 온라인 광고검색 서비스 및 기술시장에서의 경쟁제한 문제점을 제기
 - ③ (개인정보 축적) 구글이 검색, 광고, 이메일 (Gmail), 이동전화 OS (Android) 등을 통해 확보한 엄청난 개인정보와 소비자 구매정보 DB에 의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및 추가적인 시장지배력 확보 가능성

국제협력과 1/8

- □ (구글의 반응) 다양한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기업으로서 반독점행위 조사가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고 언급
 - 조사대상이 된 만큼 규제기관들이 검색 서비스와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
- □ (전문가 의견 등) 구글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해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경쟁자들과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
 - 일각에서는 구글이 참여하는 시장이 초경쟁적 (hyper-competitive)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법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가 지나친 점이 있다고 지적
 -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구글은 전통적인 방법(가격 인상, 생산량 제한 등)으로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
 - ※ 구글의 경쟁자 가운데 Twitter가 빠르게 성장 중이고, Facebook은 최근 총 방문객 수에서 구글을 앞선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최근에도 검색결과 개선을 이유로 한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변경에 대해서 경쟁사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비난이 대두(2011, 2월)
 - 우량 콘텐츠를 우대하고 불량 콘텐츠를 가려낸다는 명목으로 검색 프로그램의 논리구조를 갑자기 변경한데 대해 관련업체들이 반발했는데, 구글은 content farm*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명
 - * 검색 횟수가 많은 콘텐츠를 모방하거나 저급한 콘텐츠를 편집하는 방법 으로 자신의 검색순위를 높여 광고수입을 확보하는 온라인업체
 - 또한 구글은 현재 EU와 미 텍사스 주 법무무의 조사를 받고 있음
 - 반독점행위를 신고했던 프랑스의 검색엔진업체인 1PlusV가 구글이 보복행위를 했다며 EU에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2011. 2월)
 - 인터넷 광고주들이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텍사스 주 검찰에 신고(2010.9월)
 - ※ 출처: ① http://lee.senate.gov/record.cfm?id=331843
 - 2 http://www.law360.com/print_article/231716?section=competition
 - 3 http://www.globalcompetitionreview.com/news/article/29857/senate-committee--plans-google-antitrust-examination/

국제협력과 2/8

미국 2. FTC, 특허제도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 발간

(정리: 신용호 사무관)

- □ (개요) 미국 FTC는 특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간 하고 특허법과 경쟁법의 공통목표로서 혁신 촉진을 통한 소비자이익 증대를 강조(3. 7.)
 - * The Evolving IP Marketplace: Aligning Patent Notice and Remedies with Competition
 - '03년에 발간된 보고서*를 보완하고 8일간의 청문회('09.8월~'10.5월)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
 - * To Promote Innovation: The Proper Balance of Competition and Patent Law and Policy
 - O Jon Leibowitz FTC 위원장은 동 보고서가 美 법원과 특허청(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의 특허법 집행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 (주요내용) 기술혁신과 소비자이익제고를 위한 특허공지(patent notice) 제도 개선 및 특허침해 손해배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제시
 - (특허공지) 특허청이 공지하는 특허기술의 내용 및 범위가 불명확해 대체가능 신기술의 개발이나 이용이 저해되는 문제
 - ⇒ 개선 권고사항
 - ① 특허대상 기술의 명확한 정보를 특허공지에 포함
 - ② 공지 전 제3자의 특허심사기록 열람 및 의견제시 절차 도입
 - ③ 특허출워시 해당 기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
 - (특허침해 손해배상)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과소보상은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과다보상은 최종소비자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 초래
 - ⇒ 개선 권고사항
 - ① 대체가능 기술과 비교해 로열티 수입감소 피해액의 상한선을 설정
 - ② 피해액 산정시 신뢰성이 낮은 전문가의 법정 증언을 제한
 - ③ 특허침해중지명령을 통해서도 특허권자가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손해액 산정시 고려해 과다보상을 방지

국제협력과 3&

중국 3. NDRC와 SAIC의 반독점법 관련규정 비교

(정리: 이병남 조사관)

- ◇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이 운영 중인 반독점법 집행 관련 하위규정을 비교·정리함
- □ 반독점법상 **담합·시지남용** 금지 조항의 집행기관인 NDRC와 SAIC은 각각 담당업무 추진과 관련된 하위규정*을 공표·시행하고 있으나 **규정상**의 **차이**가 존재
 - * NDRC: 반가격독점규정, 반가격독점 법집행절차 규정

SAIC : 독점협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행정권력 남용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에 관한 규정

- ※ 해외경쟁정책동향 제50호('11.1.10.) 제51호('11.1.31.) 참고
- O 대부분의 차이점은 양기관의 역할 분담(NDRC는 가격관련행위, SAIC는 비가격행위)에 기인
- 그러나 **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한 경우*도 있음
 - * 담합의 위법성 입증요건. 적용대상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
- □ 현재 실무적으로 한 사건에 **가격**관련행위와 비가격행위가 모두 **포함될 경우** 먼저 신고서가 **접수된 기관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짐
 - 따라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규정이 서로 상충된다면 법집행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도 양기관이 서로 다르게 처리할 가능성
 - 신고자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가능 하도록 신고내용을 왜곡할 우려도 제기
 - 예) 가격관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SAIC에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비가격행위에 대한 주장을 추가해 SAIC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 두 기관의 규정내용을 파악·비교하고 향후 집행 추이를 주시할 필요

<별첨> 반독점법과 NDRC와 SAIC의 관련 규정 비교

국제협력과 4/8

<첨부>

반독점법과 NDRC와 SAIC의 관련 규정 비교

□ 독점적 합의 관련 규정*

* 반독점법(법)

NDRC: 반가격독점규정(규정), 반가격독점 법집행절차 규정(절차규정)

SAIC : 독점협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협의금지규정)

	NDRC	SAIC			
합의입증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요건	· 가격 동조적 인상 · 의사교환 [규정 제6조]	· 행위일치 · 의사교환 또는 정보교환 · 행위 정당성 여부 [협의금지 규정 제3조]			
적용대상행	적용대상행위 수평적·수직적 합의, 사업자단체 행위 [법 제13조~제16조]				
수평적 합의	· 경쟁사업자간의 가격담합 [규정 제7조]	· 상품의 생산·판매량 제한, 시장분할, 기술개발 제한, 공동의 거래거절 등 [협의금지 규정 제4조~제7조]			
수직적 합의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규정 제8조]	· 관련 규정 없음			
사업자단체 행위	· 가격관련 경쟁제한행위 [규정 제9조]	· 가격 이외의 조건에 관한 경쟁제한 행위 [협의금지 규정 제9조]			
· 사업자가 법위반 내용을 자발적으로 신고 · 중요한 증거를 제공 · 반독점집행기관 재량으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 [법 제46조]					
중요한 증거	· 가격담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절차규정 제14조]	· 합의에 참여한 사업자, 관련 상품, 합의에 도달한 수단 등에 대한 증거 [협의금지 규정 제11조]			
감경률	1순위는 처벌면제2순위는 50%이상 감경3순위는 50%이하 감경[절차규정 제14조]	· 1순위는 처벌면제 · 다음 순위에 대한 기준 없음 [협의금지 규정 제12조]			
감면 적용범위	· 관련 규정 없음	· 과징금 부과 조치에 적용 · 불법적인 이익 몰수 조치에 적용 안됨 [협의금지 규정 제13조]			

국제협력과 5/8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

* 반독점법(법)

NDRC: 반가격독점규정(규정), 반가격독점 법집행절차 규정(절차규정) SAIC: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시지금지규정)

	NDRC	SAIC			
시장지배적	시장지배적 지위				
개념	· 관련시장에서 상품가격·수량 · 다른 기업의 관련시장 <u>진입자</u>	및 기타 <u>거래조건</u> 통제 가능성 <u>해가능성</u> [법 제17조]			
	거래조건 내용(품질, 지불기간, 배달방법, 애프터서비스 등) 상술진입저해가능성 판단기준(기간, 비용 등)을 상술 [규정 제17조]				
판단기준		② 연관시장에 대한 통제력 래 의존성 ⑤신규진입제한 ⑥기타			
판단기문 	· 상동 [규정 제18조]	· ①~⑤ 각 요소들에 대해 세부 적으로 판단 기준을 상술 [시지금지규정 제10조]			
추정	시장점유률 기준 : 1개 사업자 50%이상, 2개 사업자 66%이상, 3개 사업자 75%이상 단, 10%미만 제외 [법 제19조]				
	ㆍ상동 [규정 제19조]	・상동 [시지금지규정 제11조]			
	시장지배적 지위가 추정되는 사업자가 반증 가능 [법 제19조]				
추정의 복멸	· 상동 [규정 제19조]	· 행위별로 시지금지규정 제10조에 제시된 요소를 반증 [시지금지규정 제12조]			
적용대상	가격남용, 부당염매, 거래거절, 배타적거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등 [법 제17조]				
행위내용	· 각 행위별로 가격을 이용한 남용행위 세부유형 규정 [규정 제11조~제16조]	· 각 행위별로 가격이 아닌 방법을 이용한 남용행위 세부유형 규정 [시지금지규정 제4조~제7조]			
정당한 사유	· 각 행위별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규정 [규정 제11조~제16조]	· 정당한 사유의 요건을 일반 규정으로 규정 (① 일상영업 행위여부, ② 경제성장, 공 공이익에 미치는 영향) [시지금지규정 제8조]			

국제협력과 6/8

중국 4. 발전개혁위, 소금판매업자 가격법 위반행위 처벌

(정리: 최홍수 사무관)

- □ (개요) 일본 지진에 이은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확산우려로 소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지방정부 가격주관부서에서 소금 가격을 편승 인상한 판매업자를 조사하고 처벌(3.18.)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각지 가격주관부서에 조사처벌을 긴급지시(3.17.)하자 해당부서에서 현장 조치한 사건
- □ (조치내용) 8개 省 10개 市정부는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소금판매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소금판매업자를 적발하고 처벌
 - * 절강성 온주시의 경우 소금 1포당 가격을 1위안에서 10위안으로 10배 인상
 - 위반사업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부과, **위법소득 몰수**. **인상분 반환** 등의 다양한 처벌을 부과(가격법 적용)
 - ※ 구매자에 대한 반품·환불조치도 검토되었으나 최종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음

가격인상지역		처벌내용
섬서성(陕西省)	서안시(西安市)	과태료(5만 위안)
길림성(吉林省)	덕혜시(德惠市)	과태료(3천 위안)
	화순시(樺旬市)	위법소득 몰수, 과태료(위법소득의 5배)
절강성(浙江省)	건덕시(健德市)	인상분 반환, 과태료(인상분의 5배)
	온주시(温州市)	인상분 반환
하북성(河北省)	형태사하시(邢台沙河市)	위법소득 몰수
산서성(山西省)	태원시(太原市)	과태료(위법소득의 5배)
강소성(江苏省)	남경시(南京市)	위법소득 몰수, 과태료(위법소득의 5배)
해남성(海南省)	해구시(海口市)	과태료(1천 위안)
신장(新疆)	오소시(乌苏市)	과태료(1천 위안)

- □ (시사점)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가 서민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안정 의지를 강조한 사건으로 평가
 - o 향후 명절 및 기념일 관련 상품, 운수업·여행업, 생필품 등에 대한 가격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 출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sdpc.gov.cn), CHINADAILY(www.chinadaily.com.cn, 2011.3.19.)

국제협력과 7/8

칠레 5. 경쟁당국 조사협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논란 가속화

(정리: 이영진 조사관)

- □ (개요) 검찰이 경쟁당국(FNE: National Economic Prosecutor's Office)의 조사결과 가격담합(고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8개 의약품업체*의 임원 17명을 형사기소
 - * 의약품 체인점 3社(FASA社, Cruz Verde社, Salcobrand社) 및 5개 의약품 연구소
 - 특히, FNE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 하여 행정처벌 절차가 종료된 FASA社의 임원들도 함께 기소해 논란
 - * FNE는 FASA社 등 8개 회사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00개 이상의 의약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행정처벌 절차를 진행
- □ (평가) 경쟁법 전문가들은 조사과정에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피조사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
 -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행정당국과 검찰의 법집행 상충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

브리질 6. Furlan, 브라질 경쟁당국(CADE) 위원장으로 내정

(정리 : 이영진 조사관)

- □ 호세프(Dilma Vana Rousseff) 브라질 대통령은 Fernando de Meagalhaes Furlan을 신임 CADE* 위원장(President)으로 내정
 - * Conselho Administrativeo de Defesa Economica (CADE) : 브라질 경쟁위원회
 - 상원의 인준을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2012. 1. 18.까지 위원장 업무를 수행(위원 재임기간 포함 4년 임기)
- ※ Furlan 내정자 주요 약력: CADE 위원장 대리('10.11~), CADE 위원('08.1~) 무역부 국장 ('05~'08), 개발상공부 Chief('03~'08)
- □ Furlan 내정자는, 브라질 경쟁체제 개혁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등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피력

국제협력과 88